注：

1. 본가격표 2026년 10월 21일부터 실행, 변동사항은 당행 사이트 (www.wooribankchina.com) 에 사전 공시
2. RMB해외송금업무 수수료기준은 외환업무 RMB수취기준 참조. 신용장업무에 국제신용장 및 국내신용장 포함, RMB 국제신용장 및 국내신용장업무는 RMB 수취기준 참조.
3. 소미형기업, 삼농(三农), 약자（弱势群体） 및 사회공익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행은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취한다.삼농,약자,사회공익 관련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50% 우대한다.해당 우대는 2012년04월01일부터 유효하며 종료일은 당행이 별도로 통지한다.
 [비고:소미기업이란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관련 통지>(공신부연기업[2011]300호) 문서에서 정한 소형 및 미형기업을 말한다. 삼농이란 농촌,농업과 농민을 말한다.약자란 사회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사회공익조이란 비정부기구이고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목표로 하지 않으며 사회공익사업을 주요목표로 하는 사회조직을 말한다.고객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당행은 인정하며 해당 우대를 제공한다.]
4. <상업은행 소미형기업 금융서비스 진일보 개선 지원 관련 보충통지>(은감발[2011]94호)에 따라 차관단여신 외,당행은 소미형기업 대출에 대해 약정수수료와 자금관리비를 면제하며 소형 및 미형 기업에 대하여 재무고문비,자문비 등 비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5. 은행카드업무 중 급여이체 고객은 전월 1일부터 타행ATM출금거래 발생 전일까지 당해에서 급여이체 거래기록이 있는 고객을 가리킴, 급여이체 고객 혜택은 본인 명의 카드 (타명의 부속카드제외) 한(限)함. 본 혜택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당행에서 별도 통지
6.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는 당행 개인고객 대상으로 감면 함. 본 정책은 2018년1월2일 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당행에서 별도 통지.
7. 인증서관리비는 당행 개인고객 대상으로 감면 함. 본 정책은 2014년8월1일 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당행에서 별도 통지.
8. 기타 특수업무수수료는 당행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
9. 민원 접수 채널
 （1）영업점 : 영업점 직원한테 직접 문의
 （2）홈페이지 :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hina.com）"민원 상담" 을 통한 접수
 （3）콜센터 : 24시간 콜센터（400 6789 001~6）
 （4）이메일 : 이메일（tousu@wooribankchina.com）을 통한 접수
 （5）모바일뱅킹, "민원 상담"을 통한 접수
10. 문의사항은 우리은행 영업점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전화: 400-6789-001)